

부산지방법원 2022. 10. 27 선고 2022가단2670(본소), 2022가단4096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7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63,593,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6. 23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피고 회사가 수고비 지급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장과 도장을 맡기게 한 다음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가상거래를 발생시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금 63,593,660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감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환급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,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.

2.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피고의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오던 중 2018. 12. 30.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그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옹벽공사를 미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나, 을 1-1 내지 4-9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이우철